

가정폭력 피해자/생존자에 대한 주택 차별 예방

여러분의 권리

뉴욕시 인권위원회(The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)는 시민 여러분이 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직입니다. 본 문서는 가정폭력, 성범죄, 스토킹의 피해자/생존자로서 집을 찾고 있는 세입자 및 개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2016년 7월 26일부터, 뉴욕시 인권법은 아파트를 구하고 있거나 주택을 신청하거나 세입자로 거주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르게 취급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.

가정폭력의 피해자/생존자: 형법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의 폭력 행위나 폭력 위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

- 현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
- 희생자/생존자와 함께 자녀를 가진 사람
- 희생자/생존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
- 희생자/생존자와 연애편계 또는 친밀한 사회관계를 지속하고 있거나 지속했었던 사람
- 피해자/희생자와 같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

또는, 형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성범죄나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

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라는 이유로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, 중개인의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주택 공급에서 가정폭력 상태에 근거한 차별은 무엇입니까?

이러한 차별은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라는 이유로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, 중개인이 여러분을 다르게 취급할 때 발생하며,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- 이전 배우자로부터의 보호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는 것
- 가정폭력의 희생자/생존자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거나 아파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
- 여러분이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생존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집주인이나 다른 세입자가 염려한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비우도록 강요하는 것
-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폐를 끼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가정폭력의 희생자/생존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부 임대 지원 수락을 거부하는 것

보호 대상은 누구입니까?

뉴욕시에서 살고 있거나 살고 싶어 한다면, 이민 상태와 관련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을 제외한 뉴욕시의 모든 주택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살고 싶어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주거시설을 광고하지 않는 2가족 주택
- 또는
-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도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방(들)

금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-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, 중개인은 여러분이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, 중개인은 여러분이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다른 임대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집주인은 여러분이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아파트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다르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.
- 집주인은 여러분이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아파트를 비우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, 중개인이 본 문서에서 설명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311번으로 전화를 걸어 **인권위원회**에 문의하십시오. 익명의 제보를 남기거나 여러분이 겪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, 중개인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여러분은 주택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손해를 입은 경우 주택 공급자가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NYCHRL은 고용 시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/희생자라는 개인의 상황을 기초로 하는 차별 역시 금지하며, 고용주에게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를 위해 직장에 합리적인 숙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.

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무료 워크샵에 참가하시려면 **NYC.gov/HumanRights** 를 방문하십시오.